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본 자료는 법령,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각 부처·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정부의 외국인 지원 정책

- 2 제1절 정착단계별 지원
 - 2 1. 입국 전 단계
 - 5 2. 입국 초기 단계
 - 8 3. 거주 단계
 - 10 4. 국적 취득 단계 (법무부)
- 18 제2절 분야별 지원
 - 18 1. 사회정착
 - 27 2. 취업
 - 30 3. 자녀양육·주거
 - 31 4. 출입국·체류 (법무부)
- 40 제3절 부처별 웹서비스 등 정보 지원
 - 40 1. 법무부
 - 44 2. 행정안전부
 - 46 3. 교육부
 - 48 4. 여성가족부
 - 50 5. 고용노동부
 - 51 6. 법제처



외국인 사증(VISA) 체제

- 54 제1절 사증(VISA)의 개요
 - 54 1. 개념 및 종류
 - 58 2. 최근 사증(VISA) 정책
- 63 제2절 외국국적동포 개요
 - 63 1. 정의
 - 63 2. 동포 사증(VISA)의 종류
 - 65 3. 동반가족 체류 관리
- 67 제3절 비자·동포 Q&A
 - 67 1. 자주 묻는 질문
 - 73 2. 법 위반 주요 사례
- 75 제4절 외국인 민원사무(Q&A)
 - 75 1.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
 - 80 2. 각종 증명발급
 - 97 3. 기타 사항



부 록

100 1. 외국인 관련 법령

112 2.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 운영현황
-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현황







정부의 외국인 지원 정책

제1절 정착단계별 지원

제2절 분야별 지원

제3절 부처별 웹서비스 등 정보 지원



제1절 정착단계별 지원



1. 입국 전 단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법무부)

1) 목적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관련 정부 정책, 국제결혼의 성공·실패 사례 등을 소개하여 국제결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이수대상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은 결혼이민(F-6)사증을 신청할 때 의무 이수사항이며, 고시한 국가 이외의 국민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자율적 선택사항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크, 태국 등 7개 국가

3)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내용(4시간)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및 결혼사증 발급 절차 등 정부정책 소개

-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가정폭력 방지, 인권 존중 등 인권 교육

5) 교육 장소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운영일정 공지 / 이수증 유효기간 : 이수일로부터 5년

6)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및 제3항
- 법무부 고시 제2023-695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24.1.1.)

 **한국어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1) 목적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 2) 교육기관 : 세종학당(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육원(교육부)
- 3) 이수혜택 :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 또는 한국교육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결혼이민(F-6)사증 신청시 의사소통 능력 요건*으로 인정
 *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또는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여성가족부)**

- 1) 목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생활 기본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 2) 대상지역 : 베트남 북부(1개소) 및 남부(2개소), 필리핀, 태국
- 3) 추진방식 : 여성가족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 진행
- 4) 교육과정 : 1일(4~8시간) 또는 2일(16시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사전 취업교육(고용노동부)**

- 1) 목적 : 취업능력 배양 및 국내 조기 적응 유도
- 2) 대상 : 우리나라 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3) 방식 : 고용허가제 MOU에 근거하여 송출국이 자율적으로 운영
- 4) 교육과정 : 총 45시간(한국어교육 38시간, 한국문화의 이해 7시간)

선원취업 외국인근로자(E-10) 입국전 교육(해양수산부)

- 1) 대상 :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
- 2) 방식 :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 최초 승선인 경우 30일 이상)
- 3) 교육내용 :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 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
- 4) 법적근거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8호, 2018.11.28.) 제7조



2. 입국 초기 단계

🔍 조기적응프로그램(법무부)

- 1) 목적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빠른 적응을 위해 입국초기에 기초 생활법률 및 법질서, 필수 한국생활 적응정보 등을 교육하여 입국 초기 조기적응 지원
 -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진행
- 2) 참여 대상
 - 의무 : 방문취업(H-2)* 및 호텔·유흥(E-6-2) 자격 체류외국인
 -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자
 - 자율 : 외국인유학생(D-2, D-4 등), 결혼이민자(F-6),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 * 전체 합법체류자 중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이주배경 청소년
 - **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 3) 교육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2시간) 및 체류유형별 맞춤형으로 짜여진 '특수과목' (1시간) 등 총 3시간으로 구성
- 4) 운영 기관 : 2개 지원단, 143개 지원센터 ('23년 기준)
- 5) 이수 혜택 :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
- 6)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 고용허가제 외국인(E-9) 취업교육(고용노동부)

- 1) 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 2) 비용 : 고용주 부담
- 3) 교육내용 : 한국의 직장문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처리 절차, 성폭력·성매매 예방,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등 16시간
 - ※ 취업교육기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귀국 조치, 교육 1일차에 외국인근로자는 전용보험 가입을 위해 통장개설

4) 교육 기관

구분		취업교육기관
외국국적동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 외국인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 제외)·서비스업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라오스)·서비스업	노사발전재단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어업	수협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5) 외국인 전용 보험 가입 및 사업주 인도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마지막 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보종보험을 가입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 취업교육기관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인계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이동

특례고용허가대상자(방문취업 H-2) 취업교육(고용노동부)

- 1)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이 허가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외국인등록 전에도 취업이수 가능(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2) 교육내용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각종 보험 가입 안내(신규 16시간(3일), 재입국 6시간(1일))
- 3) 비용 : 근로자 부담
- 4)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

※ 건설업 취업인정증

- 대상 : 취업교육 수료 후 교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특례고용허가대상 외국인
- *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음
- 비용 : 근로자 부담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 교육장

🔍 선원취업외국인(E-10) 취업교육(해양수산부)

- 1) 대상 :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
- 2) 교육내용 : 한국어와 한국어시험, 한국문화 이해교육, 기능교육, 산업안전교육, 관계법령교육 등 (3일 이내)
* 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하에 선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
- 3) 비용 : 근로자 부담
- 4) 교육기관 : 수협중앙회



3. 거주 단계

Q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 1) 개요 :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음
- 2) 참여 대상 :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중 합법체류자, 국적취득(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교육 기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전국 340개, 23년 기준)에서 교육 실시
- 4) 교육 과정(정규)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 등에 대하여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국립국제교육원 주관) 등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과정 교육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하여 단계 승급
- 5)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23.5.부터 조선업 현장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산업현장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중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법무부)

- 1) 개요 : 대한민국에 영구적 구성원이 되는 정주형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2) 참여 대상 : 영주(거주)체류자격 및 귀화신청자, 국적취득 예정자,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우수인재)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
- 3) 세부교육과정

연번	세부교육과정	대상	교육내용
1	준법시민교육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중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거주 및 영주자격을 신청한 자 포함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법질서 교육 등 (3시간 과정)
2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귀화신청자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귀화면접대비 (3시간 과정)
3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	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 (1시간 과정)
4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이공계 특성화대학·연구기관) 연구원·유학생	영주·귀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제공, 법질서 교육 등 (2시간 과정)

4) 교육장소 및 신청방법

- 교육장소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대학교 등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2024년)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2022년 7월부터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신청자 포함), 국적취득 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교육과정		
교육과정	대상	교육내용
준법시민교육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중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거주 및 영주자격을 신청한 자 포함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법질서 교육 등 (3시간 과정)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귀화신청자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귀화면접대비 (3시간 과정)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	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1시간 과정)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이공계 특성화대학·연구기관) 연구원·유학생	영주·귀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법질서 교육 등 (2시간 과정)

교육장소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대학교 등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2024년 재공 예정)

4. 국적 취득 단계 (법무부)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1) 대상 :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혼인의 출생자, 先 자녀 출생, 後 부모의 혼인신고의 경우)

2) 요건

- 인지자 :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 국민인 생부의 인지신고로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피인지자를 등재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신고시 국적취득)
 - * 법무부가 위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함으로써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이후 피인지자는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주민등록 절차 거침
- 효과 : 인지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

1)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과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
-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2) 간이귀화

- 대상 : 귀화자의 자녀, 국민의 입양자녀, 2대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등 대한민국과 혈통·지연적 관련성이 있거나 (제1항)과 국민의 배우자(제2항)
- 요건 : 일반귀화 요건 중, ①호 국내거주기간 요건 완화(2~3년)

3) 특별귀화

- 대상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 요건 : 일반귀화 요건 중, ①, ②, ④호 요건 면제

귀화 신청 후 처리 기간

- 귀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매월 초 업데이트) 가능
-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일반적인 소요기간을 말하며, 개인별 심사과정에 따라 허가(불허)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9조)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2) 예외 :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판정 (국적법 제20조)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사할린 동포 1세 (1945. 8. 15. 이전 출생 또는 이주자) 및 그 자녀(2세)
 - ※ 그 배우자, 자녀는 귀화(국적회복, 간이, 특별) 대상
- 북한적 동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호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북한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위 법률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탈북자)은 국적판정절차 없이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2) **효과**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적판정 통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국적재취득(국적법 제11조)

- 1) **개념** : 외국국적포기의무 미이행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무국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특별 규정으로 보호하는 제도
- 2) **대상** :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람
- 3) **절차** : 외국국적 포기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 가능
- 4) **효과** :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국적상실]

국적상실 사유

- 1)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조제3항)
-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제15조제1항)
 - 다만,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인지 등 신분행위의 결과로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제15조제2항)
- 3)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
- 4)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4조의2제4항)

5)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제외)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 통보 의무

-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사실 통보 의무 발생(제16조제2항)
 -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
- ※ 국적상실자 발견 통보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국적법 제3조]

1 인지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 인지사실 기재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3 신고 수리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등 요건 확인 후 신고 수리

4 고시 및 통보

출입국 · 외국인관서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여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5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 · 외국인관서

-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3개월 내)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6 주민등록

-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주민센터)



귀화 허가 흐름도

(국적법 제4조~제7조)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
 -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와 홈페이지(www.hkorm.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면접 심사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 혼인관계 유지중인 결혼 이민자 등은 종합평가 면제 가능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 요건 심사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중 · 통 : 체류실태, 송유가능여부, 범죄경력 등 확인
 - 필 : 할 : 입양의 진중성 등 확인
 - 추천자료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

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청사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6 고시 및 통보

법무부

- 관보고시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 국 국 적 포 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귀화 허가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8 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국적회복 허가 흐름도

[국적법 제9조]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접수
 -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출입안내센터☎1345에서 안내
- 미성년 자녀는 두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해당자)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필요

2

국적회복 요건 심사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시 서류동향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국적회복 요건 심사

3

심사 결정

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소원조회,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4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회복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취득

5

고시 및 통보

법무부

- 관보고시
- 대법원 등 관계 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6

외국국적 포기 등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적법」 제10조에 규정
 - ※ 65세 이상 영주국국 회복재국적법 제10조 제4호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7

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법무부

국적취득 후 해야 할 일

(1) 국적취득자 원국적포기의무(국적법 제10조)

- (대상) 귀화, 국적회복허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주한 자국대사관 발급 국적포기증명서 등)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 이행
 - ※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가 발급되며, 동 확인서가 있어야 주민등록신고가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대상(복수국적 허용)
 - ① 결혼이민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
 - ②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③ 해외입양인, 국적회복한 65세 이상 고령동포 등
 -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이 원칙이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①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경우, ②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 등 절차

- 법무부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사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함으로써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며,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 주민등록신고 시에 ①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②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발급), ③ 기본증명서, ④ 사진 2매 등의 서류 확인



2) 다문화학생 교육 (교육부)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이해교육을 통해 학교·유치원 내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유치원 :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초·중등 : 정규 교육과정 등에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토론, 프로젝트수업 등의 형태로 지속성 있게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한국어학급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교육하는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 유치원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가 다수 재원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중심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을 위한 학급 마련
 - 초·중등학교 :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 ※ 한국어학급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 지원
- 징검다리과정 :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학교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준비교육과정 운영
 - 초등학교 : 생활영역과 학습영역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운영
 - 중학교 : 또래문화 기반 의사소통 영역과 체험·활동 기반 학교생활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
 - ※ 지역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징검다리과정 운영교 현황은 '다문화교육 포털'(<https://edu4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문화학생 멘토링 : 국내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해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언어교육,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멘토 :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참여대학 재학생
 - 멘티 :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현황>

연번	지역	소재지	기관명	전화번호
1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강원다문화교육지원센터	033-258-5520
2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문화교육지원센터	031-820-0654
3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다문화교육지원센터	044-320-2414
4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3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2-255-8180
5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대전다문화교육지원센터	042-616-8256
6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다문화교육지원센터	062-380-4361
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구월동)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	032-420-8266
8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65길 46	대구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3-231-3930
9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09번길 26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1-819-7062
10	서울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02-3999-366
11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2길 2-21	제주다문화교육지원센터	064-784-9040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5-210-2161
13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054-805-3264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로 31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061-640-3330
15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로 흥산로 111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063-239-3450
16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041-640-7540
17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정남로 1929	충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043-290-2763

3) 정보격차해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음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제4호·제4항, 「기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3호)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상담 (법무부)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 전화☎(1345)또는 전자통신망(www.hikorea.go.kr)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 가능(『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주요 기능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체류 민원 상담
-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련 생활편의 안내 및 고충 상담
- 19개* 기관 3차 통역서비스 제공

* 질병관리청(1339),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110),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경찰서, 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 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3차 통역 서비스 지원
- 전자민원 신청절차 안내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상담 시간: 평일 10시 ~ 22시

2) 공존(共ZONE)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소식지로 출입국·이민정책안내, 출입국관서 및 업무소개, 체류외국인을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



출입국·이민정책 안내



※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kr

친절 직원 소개



법률지원 (법무부)

1)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재한외국인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서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와의 3자동역(전화상담) 방식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2) 법률홍닥터

- 개요 : 법률홍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홍닥터'로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현재 65명(2023년 기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류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 ※ 소송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이용방법 :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후 방문
 - ※ 상담시간 : 평일 10시~17시
 - ※ 홈페이지 : lawhomedoctor.moj.go.kr



<2023년 법률홍닥터 배치기관>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서울 (14)	강서구청	02-2600-6530	대전 충청 (9)	충주시청	043-850-5959
	관악구청	02-879-763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광진구청	02-450-7408		대전동구청	042-251-6229
	노원구청	02-2116-3508		대전광역시청	042-270-2384
	도봉구청	02-2091-3009		대전유성구청	042-611-2931
	동작구청	02-820-9612		논산시청	041-746-6044
	마포구청	02-3153-8529		서산시청	041-664-1739
	서대문구청	02-330-1558		아산시청	041-540-2075
	양천구청	02-2620-3352		전안시청	041-521-3292
	은평구청	02-351-7020	광주 전라 (8)	익산시청	063-858-9280
	종로구청	02-2148-1384		전주시청	063-281-0309
	중랑구청	02-2094-1623		전북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서울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광주 광산구청	062-960-3672
	HUG전세피해지원센터(강서구)	02-6917-8113		광주 남구청	062-607-2133
인천 경기 (15)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광주 서구청	062-360-7039
	인천 미추홀구청	032-880-5910		순천시청	061-749-3394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고양시 덕양구청	031-8075-5600	대구 경부 (9)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광명시청	02-2680-6350		대구 중구청	053-661-2148
	광주시청	031-760-3795		대구 동구청	053-667-6921
	남양주시청	031-590-8721		대구 북구청	053-665-3123
	구리시청	031-550-2575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동두천시청	031-860-2036		경산시청	053-810-5925
	성남시청	031-729-2493		구미시청	054-480-5149
안산시청	031-481-2592	영주시청		054-639-6059	
오산시청	031-8036-7427	포항시청		054-270-5754	
이천시청	031-645-3855	부산 울산 경남 (8)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수원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부산 남구청	051-607-4316	
강원 (2)	삼척시청		033-570-3633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속초사회복지협의회		033-639-2632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7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5689
				울산광역시청	052-229-2278
				진주시청	055-755-7560
				창원시청	055-220-5466

1) 법적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등을 위한 노력 필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2) 주요내용

-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2008년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각종 인식개선 홍보영상과 미담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



이민자멘토단 사회공헌활동('22. 9.)



사회통합합의회 활동 ('22. 9.)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23. 5.)



이민자·다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23. 6.)



제10회 한마음걷기축제 ('23. 10.)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부)

1)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

2. 취업

🔍 취업 허용 (법무부)

- 외국인은 입국 목적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합법체류 여부, 취업가능 여부, 취업가능 범위, 취업 및 고용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 HOME > 정보마당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성명	J** H****
등록번호	
체류자격	F6
합법 체류 여부	합법 체류자입니다.

※ 등록/거소신고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 취업가능분야 및 고용절차

- ❖ 해당외국인은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 HOME > 정보마당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

성명	R****
등록번호	
체류자격	E9
합법 체류 여부	합법 체류자입니다.

※ 등록/거소신고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 취업가능분야 및 고용절차

- ❖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외국인이 취업가능한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은 제외
 - ❖ 해당외국인 및 제3자가 해당외국인의 고용을 의뢰할 경우
 - (주의사항) 해당외국인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고용센터의 알선 없이는 고용이 불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 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가능(「국민평생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 홈페이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직원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구분	대상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취업지원 기관으로서, 결혼이민여성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제공서비스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등 	새일센터에 신청(1544-1199) ※ 홈페이지 : saeil.mogef.go.kr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기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등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 (직업훈련 : 훈련기관)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 (사후관리 : 가족센터 등)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1577-93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서비스 소개 · 직업교육훈련 · 새일예성인턴 · 경력이음 · 경력단절예방 · 집안상담 · 새일보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예방 · 경력이음 · 새일예성인턴 · 지원금신청 (민간사업자만) · 대상경력인단 · 온라인신청서함

광주 ·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남 · 충북 · 대전
 경북 · 경남 · 대구 · 울산
 전남 · 전북 · 광주 · 부산
 제주 · 세종

공동대표전화(02-474-400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3(강동) 남동빌딩 5층...
 경북새일센터(01-860-32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63-8(수유동, 수유로7차5층)
 경기새일센터(01-2082-4346)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류대로42길 18-6 강변한신코아 1...
 광주새일센터(02-886-95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곡로 7가, 광일빌딩) 3층 (한동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리로
 위기는 멀리 앞서는 가까이
 직업교육훈련 · 취업알선

3. 자녀양육·주거

Q 무상교육의 특례 (보건복지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동과정을 제공하는 경우(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동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동과정은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Q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제5호)
- ※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Q 주택지원 (국토교통부)

-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 ※ 신청방법 :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출입국·체류 (법무부)

비자 신청 관련

1) 전자민원 이용 안내

- 다음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신청 가능 (전자민원 이용 시 법정수수료의 20% 할인 혜택 제공)

<전자민원 대상 업무>

순번	내 용
1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단기체류자 : 모든 체류자격
	② 등록외국인 : 일부(D-3, D-8, E-7, F-2, F-6, G-1, F-1) 제외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2	재입국허가
3	여권변경신고
4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5	체류자격변경허가 [D-2, F-4(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6	근무처변경허가 (E-9)
7	시간제취업허가 (D-2, D-4)
8	고용·연수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 신고 (D-3, E-1~E-10, H-2)
9	취업개시신고 (H-2)

2)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 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조회 가능
 - ※ 주의사항 :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음

3) 전자팩스(FAX) 이용 안내

- 전자팩스를 통해 각종 신고 업무 가능 (FAX:1577-1346)
 - ※ 전국 단일번호(1577-1346) 사용, 신고 가능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이용가능 사무>

순번	내 용
1	고용변동신고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중 아래 항목
	①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의 변경
	③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변경 포함)
④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 인턴신고	

※ 주의사항 : 회신문은 신고서 등이 처리기관에 착신되었음을 알려드릴 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팩스신고 후 반려되어 사무소 방문이 요구될 수 있음

4) 출입국 방문신청 안내 (방문예약)

-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필요

5) 전자비자제도 안내

- 전자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비자 신청 가능

<전자비자 발급 대상>

순번	내 용
1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E-1, E-3, E-4, E-5, 첨단과학 기술 분야 고용추천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KOTRA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E-7
2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 유학생(D-2-3, D-2-4)
3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C-3-3, G-1-10)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4	재외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5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① 국내 기업에서 초청하여 상용목적으로 빈번 출입국하는 사람(C-3-4) ②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C-4-5)

 체류 지원

1) 재정착난민 제도

- 개요 :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정착 중인 난민 중 우리나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

※ '22년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총 58,457명의 난민을 자국으로 수용함

■ 수용 절차



■ 재정착난민의 처우

- 법적 지위 :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취업활동 가능)
-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 있어 국민과 같은 처우

■ 법무부 지원사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소재)에서 한국어 등 초기 적응교육(6개월)
- 기초생계수급 신청*, 아동 취·입학 지원, 취업처 연계 등
 - * 입국 직후 소득이 없는 단계에서 신청
- 지역사회 정착 후 건강, 심리상담 및 생활지원 멘토링

■ 법적 근거 : 「난민법」 제2조, 제24조, 제30조~제38조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 개요 :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아래 요건 중 1개 요건을 반드시 충족)

[요건 1]

- 국내 출생 혹은 영·유아기(6세미만) 입국
- 6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혹은 고교 졸업

혹은

[요건 2]

- 영·유아기(6세미만) 지나서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재학 혹은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조치사항

[아동]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으로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시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시
 - (유학 또는 취업자격 요건 충족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시) 1년간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 ③ 퇴학 혹은 범법행위 등 조건 미준수시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부모]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류 허용
- ①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을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조치
- ② 아동 고교 졸업 혹은 성년 전환시
 - 부모는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내용 : 체류외국인이 금융회사(은행)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신분증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전송받아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 대상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 추진



<대상 은행('23. 11월)>

서비스 구분	개	은행
대면/비대면	1	전북은행
대면	2	하나은행, 토스뱅크
비대면	6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4)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서비스

- 개요 :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 13자의 숫자로 구성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체계와 동일)

- 근거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 부동산등기법의 개정(1986.12.23.)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 부여 대상 :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
※ 등록외국인은 제외
-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접수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
 - 준비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등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수수료 : 없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 발급기관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단, 공항만 사무소 제외)
 - 준비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등
 - 수수료 : 1,000원

출입국 심사 지원

1) 자동출입국심사

- 등록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 바이오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의 경우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자동심사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센터 방문하여 재등록 권장
- 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
※ 단,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
- ②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
 -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 제출 불필요
- ③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 부착
- ④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 >

구분		이용대상자	비고
국민		■ 만 7세 이상	■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만 7세 이상	■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단기체류자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	■ 사전등록 생략 ■ 적절한 체류기간 내 '출국' 시 이용 가능

※ 만 7세 ~ 만 14세 해당자 사전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전국19곳) >

등록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032-740-7400	07:00~18:00 (휴무일 없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출입국서비스센터	032-740-7368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02-2664-6202	평일 09:00~18:00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출국장 내	051-979-1300	
대구국제공항	2층 대구출입국 공항본실 내	053-980-3572	
제주국제공항	3층 귀빈실 옆	064-741-5500	
서울역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2층 서울역출장소	02-362-8431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천항(국제선)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내	032-890-9164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내	051-461-4973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청주국제공항	1층 여객청사 동편 (청주 출입국 공항본실)	043-214-0093	사전 전화문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1층 글로벌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02-2650-6351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1층 8번창구	051-461-3127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1층 체류민원실	032-890-6322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1층 민원실 17번 창구	031-695-3846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2-6980-4741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실 7번 창구	042-220-2124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43-230-9019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체류민원실	062-605-5140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45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음

2) 서울역 사전출국심사

- 서울역에서 사전출국심사를 받은 승객은 실제 출국이 이뤄지는 인천공항에서 전용 출국통로를 통해 입장 후 출입국우대심사대 또는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최종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 가능
 - ※ 출국 당일 원하는 시간에 탑승수속 후 수화물 없이 공항으로 이동
- 위치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2층
- 이용대상 : 당일 인천공항 출발 국제선 항공편을 소지한 서울역-인천공항 직통열차 승차권 구매 고객
- 이용가능 항공사
 - (터미널1)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 (터미널2) 대한항공, 진에어
 - ※ 단, 항공사별로 탑승수속 가능 노선이 상이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탑승수속 : 05:20~19:00
 - ※ 탑승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터미널1), 3시간 20분 전(터미널2)
 - 출국심사 : 07:00~19:00
- 내용 :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출국심사
 - 전용 출국통로 이용 : 사전 출국심사를 완료한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3층)의 전용 출국통로 이용 가능

3) 외국인의 국민입국심사대 이용

- 법무부는 공항만 입국심사 시 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외국인의 심사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 외국인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 대상 :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및 그 동반가족, 영주권자

4)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한 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에서 심사 후 출국 가능
 -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 사전신고 확인서, 출국항공편 예약확인증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제3절 부처별 웹서비스 등 정보 지원



1. 법무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 Korea)'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용안내 :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출입국·체류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로, 한국어와 19개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beng골어, 우루두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주요 내용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체류 민원 상담
 -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련 생활편의 안내 및 고충 상담
 - 19개 기관 3자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지원 서비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소시넷(Soci-Net)'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 가능
 - ※ 이용안내 : 홈페이지 접속(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각종 사회통합교육 참여 신청, 결과확인 등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소개 | 통합지원프로그램 | 감사프로그램 | 회원가입(member sign) | SNS 채널(SNS)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알림마당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유의사항

1.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2.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방법
3. 수강생 유의사항

[자세히 보기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안내	귀국대상자 종합평가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신청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평가신청	공지사항					
사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명 : 2023년 (특)합/사전평가 4차 - 평가일자 : 2023.10.21 	중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마감시간 : 12:30 	영주권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종료일자 : 2023.10.08 	귀화권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제2차 사전평가 접수 마감일 연장 알림 • 2023년 하반기 사전평가 추가 및 일정 변경 알림 • 2023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 (영주출급일) 2023년 영주 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통합시민교육) 일정 변경 알림 • 통역(어시)의국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관련 안내 • 2023년 하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귀화권 종합평가 일정 안내 		

법무부 (13806) 경기도 과천시 권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층 (TEL.국번없이 1345)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FAQ 고객센터

- 신속·정확한 맞춤형 사증정보 제공, 온라인 방식의 사증신청·접수·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사증 업무처리를 지원함

※ 홈페이지 : www.visa.go.kr

2. 행정안전부

정부24(각종 증명서 발급 등)

-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및 민원서비스(25종)* 온라인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적관련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등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교육·상담 등 다양한 혜택 안내

* 정부24(www.gov.go.kr) 홈 메뉴에서 "for foreigner"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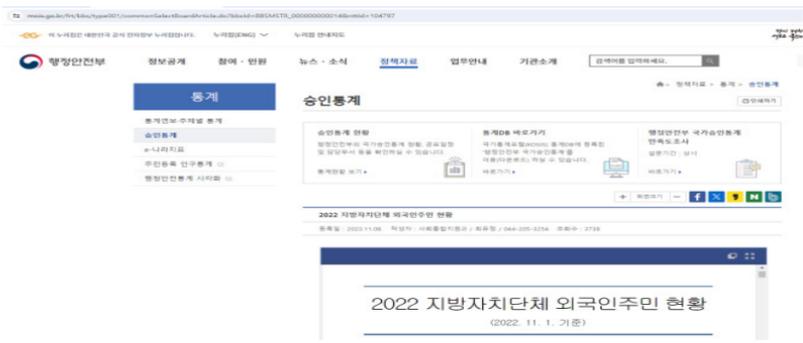
The screenshot displays the GOV.KR website interface for foreigners.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General Services',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The main heading is 'Services for Foreigners', with a sub-heading stating: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various online certificate issuance services and a variety of benefits such as educ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for foreign nationals.' Below this, there are icons for 'Available services' and a 'language selection' dropdown menu with options for '한국어', 'English', and '중국어'. A horizontal menu below features icons for 'General Services', 'Visa/Stay', 'Passport/Certification', 'Adaptation support', 'Support Centers', and 'GOV.KR Overview and Service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ored sections: 'Foreign Workers' (blue), 'Marriage Migrants' (purple), and 'Foreign Students' (teal). Each section lists specific services with a right-pointing arrow icon.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Foreign Students
Employment guide	International marriage guide	Studying in Korea
Work support	Pregnancy/ childbirth/childcare support	Support for foreign students
Support for returning to one's country	Living support	Support programs
Support centers	Counseling centers	Supporting agency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정착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제공

※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통계(승인통계)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 안내 서비스 제공

- 지진 등 재난발생시 행안부·기상청이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자동번역하여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서비스 실시('18.1.1~),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까지 확대 실시

*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이외에 한국어 안전디딤돌(125종) 앱 중 외국인에게 필요한 대사관 위치, 119·112센터 위치 조회, 대피소 및 응급의료 센터 정보 등 23종을 영어·중국어로 서비스 중('14.4월부터 서비스 개시, '23.12월 현재 다운로드건수 10만 건)



3. 교육부

중양다문화교육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1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양다문화교육센터(교육부 지정)는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및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진입 안내 등의 지원 제공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 **한국어 학급(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 학급으로 지정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유아) 등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원

※ 전국 272개 학교(2021년 기준)에서 404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을 통해 거주지역의 한국어학급 확인 가능)



- **이중언어교육** :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중언어교재 및 전자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 미래에셋백현주재단(foundation.miraeeasset.com) 또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 접속하여 이중언어교재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00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 전자책 활용 가능



-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 학생 멘티를 1:1 매칭하여 학교적응과 기초학습 지원, 멘티인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방문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동안 학습을 도와주며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정도 멘토링 실시

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4년 기준, 전국 230개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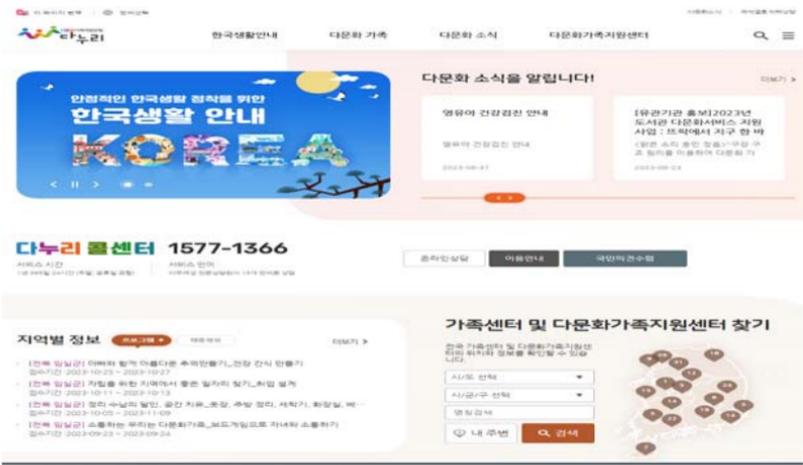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 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 13개 언어*로 해당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편리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하여 상담 가능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상담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의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할 때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생활 상담은 물론 국적, 체류 문제 등의 상담과 법원 진술 시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
 -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경찰, 법률구조기관, 병원, 전국 병원 내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
 - 모든 상담은 비공개 원칙



다누리 (다문화가족 지원포털)

- 한국생활정보, 학습정보, 센터정보, 상담실, 자료실, 다문화소식, 웹진 운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자국어 상담 및 통역 지원
- ※ 홈페이지 : www.liveinkorea.kr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 등 지원 제공
- ※ 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명시된 이주배경 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
- 동 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과 학습능력 및 자립역량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
- ※ 이주배경 청소년은 부모 중 1인 이상 또는 본인이 한국 외 지역 출생이거나, 한국 출생 후 국외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개념

5. 고용노동부

■ 외국인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등 국내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상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벵골어, 우르드어(파키스탄), 네덜어, 미얀마어, 키르키즈스탄어, 동티모르어 등 총 17개 언어

※ 홈페이지 : www.hugkorea.or.kr

The banner features the HUGKorea logo (외국인인력상담센터) in the top left. Navigation links for '센터소개', '알림마당', and '정보마당' are in the top right. The main text reads 'BUSINESS PARTNER' in large red letters, followed by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행복한 동행을 지원합니다.' in blue. On the right, a circular image shows a smiling woman in a pink shirt and a man in a white shirt and yellow hard hat.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id pattern.

The banner is light blue and features an illustration of a woman at a laptop. It displays 'ARS 상담전화번호' and the phone number '1577-0071' with a red phone icon. Below the number, it says '1577-0071 누르면 후 아래 국가별 번호 + * 를 눌러주세요.' and '상담시간: 09:00 ~ 18:00 상시운영'. At the bottom, there are three buttons for language selection: '한국어: 1 + *', 'Bahasa Indonesia: 1 + *', and 'پاکستانی (Pakistani): 1 + *'.

6.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결혼이민자, 비자·여권, 산업재해보험, 외국인 근로자, 운전면허, 이사, 주택임대차, 금전거래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령정보를 12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

※ 홈페이지 : www.easylaw.go.kr







외국인 사증(VISA) 체계

제1절 사증(VISA)의 개요

제2절 외국국적동포 개요

제3절 비자·동포 Q&A

제4절 외국인 민원사무(Q&A)



제1절

사증(VISA)의 개요



1. 개념 및 종류

사증의 의미

-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비자(사증)는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③, ④ 생략

사증의 종류

-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 가능한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구분

발급

- 1) 일반 :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및 각 체류자격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필요
- 2) 사증발급신청서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대리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가능

사증 종류 및 체류기간의 상한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은 A-1부터 H-2까지 모두 8개의 그룹으로 구성

※ 체류기간의 상한은 1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을 의미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A-1 (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재임기간
A-2 (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 (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B-2 (관광·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90일
C-3 (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 (단기취업)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D계열 : 교육, 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비 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
D-3 (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2년
D-4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
D-5 (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2년
D-6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D-7 (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3년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5년
D-9 (무역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2년
D-10 (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

•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비 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5년
E-2 (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2년
E-3 (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5년
E-4 (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5년
E-5 (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년
E-6 (예술총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E-7 (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E-8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 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5개월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H-2 (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F-2 (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F-4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F-5 (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F-6 (결혼이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

• G계열 : 인도적 사유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G-1 (기타)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

• H계열 : 협정에 의한 취업

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의 상한
H-1 (관광취업)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협정상 기간

2. 최근 사증(VISA) 정책

Q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 계절근로자(C-4, E-8)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및 수산물 원시 가공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체류기간 : 단기취업(C-4) 최대 90일, 계절근로(E-8) 5개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절차 흐름도>



Q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1) 개념 :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 : '22.10.4.~'23.10.3.(1년)

2)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역우수인재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
 -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를 추천
 - 외국국적동포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제한*을 완화
 - * 현재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단순 노무 등(43개 직업)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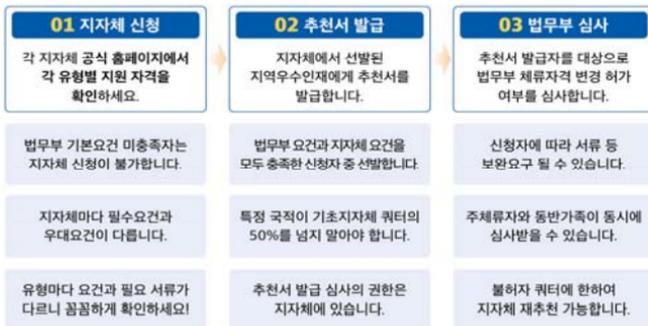
3)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관련 별표1의2 "파"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공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



5)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혜택

- 동반가족 초청 : 해외 거주하는 배우자 등 가족 초청, 동반가족에게 거주비자 발급
- 취업허가/제한완화 : 배우자 취업허가, 재외동포 단순노무 제한 일부 완화
- 지자체 정착지원 : 숙소, 언어프로그램 지원 등 지자체별 정착지원
- 영주자격 특례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R) 자격변경시 소득요건 완화

Q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K-point E74

1) 개요 :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



2) 신청대상 외국인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것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근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투자이민제도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개념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 유치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투자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 투자 절차
 - ① (사전심사)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②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 ③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및 출입국 지원
 - ④ (투자확인 및 거주(F-2)자격변경)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2)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 개념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투자지역내 투자대상 부동산(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투자 기준금액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지역

※ 부동산 가격에 따른 투자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지역별 투자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고시문 참조

순번	투자지역	투자기준금액(억원)	시행기간
1	제주특별자치도	10	2020.02.01. ~ 2026.04.30.
2	여수 화양지구	7	2016.07.11. ~ 2024.12.31.
3	강원도 강릉·정동진 지구	7	2016.02.01. ~ 2024.12.31.
4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10	2013.05.20. ~ 2026.05.19.
5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10	2013.05.20. ~ 2026.05.19.
6	인천 송도국제도시	10	2011.11.01. ~ 2026.04.30.
7	인천 청도국제도시	10	2011.11.01. ~ 2026.04.30.
8	인천 영종지구	10	2011.11.01. ~ 2026.04.30.
9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10	2011.08.19. ~ 2026.04.30.
10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10	2011.02.14. ~ 2026.04.30.



제2절

외국국적동포 개요



1. 정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동포 사증(VISA)의 종류

단기방문(C-3-8)

- 1) 대상 : 대한민국에 잠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
- 2) 종류 :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 3) 체류 가능 기간 : 입국 1회당 최대 90일 체류 가능
- 4)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1매, 수수료,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사안에 따라 재외 공관에서 별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 단기방문(C-3-8) 사증으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 취업 전면 제한

방문취업(H-2)

1) 대상 :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18세 이상 동포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 체류가능 기간 : 3년 (국내 연고 유무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별도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고,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 허용

3)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본, 사진1매, 수수료, 동포입증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등

※ 국내연고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출서류 상이함

재외동포(F-4)

1)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

2) 체류가능 기간 : 1회 최대 3년(체류기간 연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 체류 가능)

3)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1매,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동포영주(F-5)

-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장기체류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자격으로, 입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포영주 자격 취득 가능
- 발급 대상 요건 :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동포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3. 동반가족 체류 관리

자격요건

-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서, 그 자녀가 다음의 조건 충족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 가능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Q 외국인 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필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Q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재학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혼인 자녀 제외)

Q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 동포의 배우자 :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
- 동포의 미취학 자녀 및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부 또는 모 :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허가

2)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Q 체류자격 부여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부여 신청 및 외국인 등록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제3절

비자·동포 Q&A



외국인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 ▶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민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 ▶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②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등록외국인(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가능)
 - ④ 재입국허가 :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체류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하나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 임신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를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Q 해외에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이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이 불가능하고 입국한 다음 날부터 사전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영주권자도 연장 신청이 필요한가요?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신청하여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 각종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여권 변경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여권 변경 시 방문/민원대행/전자민원/팩스 중 신고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초과된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해외 출국 중인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이 가능한가요?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Q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동포 체류자격의 재입국 기간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체류자격별 동포의 재입국기간은 (체류기간 내에서 출국일로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방문취업(H-2) 자격 : 1년
- ② 영주(F-5) 자격 : 2년
- ③ 재외동포(F-4) 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Q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이수할 경우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제의 경우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을하고, '평가신청'메뉴를 누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로 자동 연동됩니다. 평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단계평가 신청·접수합니다.

- ▶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단계를 배정받았으면, 사회통합정보망 '과정신청' 메뉴에서 교육기관과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선착순)

※ 단, 사전평가없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0단계부터 가능

구분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사전평가점수 (TOPIK 등급)	3점 미만 -	3~20점 -	21~40점 (1급)	41~60점 (2급)	61~80점 (3급)	81~100점 (4~6급)	-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국립국제교육원 주관) 등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과정 교육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하여 단계 승급

Q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시 한국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숙련기능인력(E-7-4)자격 변경시 한국어 능력이 필수사항입니다. 한국어 요건은
 -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3단계 이상 단계 배정)이어야 합니다.

Q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단계의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법질서를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구제 절차와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총 18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시, 2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덜어, 벵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Q 해외에서 비자(사증)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꼭 방문해야하나요?

- ▶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체류지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소신고자(F-4)는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체류지의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가능)

※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Q 3년 전 계약한 주소지에 현재도 살고 있던 한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체류기간 연장 시 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목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 가능하며, 집 계약서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신청인 명의의 세금 납부 고지서 또는 ② 숙소제공자 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숙소제공자 집 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유학생(D-2)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한가요?

- ▶ 본인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글 성명 병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재한학교 : 재한학교협회가 발급하는 호적등본에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 ② 중국동포 :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의 민족란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③ 과거 한국국적 국적보유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에서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동포들을 위한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을까요?

▶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3.6.기준)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경상북도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4, 2층	054-742-4336
2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3	사단법인 너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	031-493-7053
4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2층	042-543-1191
5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9
6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7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1층	02-6900-8000
8	한중사랑교회	경기 부천시 경인로605, 상가동 B201호	02-837-9296
9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3번길 10, 3층	032-344-1412
10	경주YMCA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283	054-743-2888
11	사단법인 글로벌드림 다문화연구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 473, 3층	055-322-1365
12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	032-816-9002
13	사단법인 반딧불 나눔복지재단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65	041-352-0607
14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052-291-3133
15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062-962-3004
16	하이웃이주민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층	054-772-0691

2. 범위반 주요 사례

Q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1,000만원

Q 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남편(한국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했으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요?

- ▶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100만원

Q 저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 ▶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2호
- ▶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100만원

Q 저는 동반(F-3) 자격으로 2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현재 6개월입니다.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별다른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
- ▶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100만원(신청의무자에게 처분)

Q

저희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A회사입니다. 며칠 전 회사명칭이 B로 변경되었는데,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인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200만원

Q

저는 외국인 유학생(D-2)입니다. 현재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Q

저는 회화지도(E-2) 강사로 A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A학원에서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B학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신고 대상인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 처분사항: 허가 대상의 경우 범칙금 최대 1000만원, 신고 대상의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제4절

외국인 민원사무(Q&A)



외국인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

Q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인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 ▶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소 신고자가 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Q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우자,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신원보증인 등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본인이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 체류지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제34호의 8서식),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 5서식)
- ② 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③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유학생, 근로자 등), 숙소제공확인서, 입실확인서(고시원 등)



본인 외에 타인이 대리하여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가족관계

- ① 체류지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제34호의 8서식), 국내거소이전 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5 서식)
- ②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
- ③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④ 위임장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불요
 - ※ 체류지가 같은 미성년 동반가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원 중 부 또는 모가 위임없이 체류지 변경 신고 가능

2) 고용관계

- ① 체류지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제34호의 8서식), 국내거소이전 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5 서식)
- ②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
- ③ 재직증명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대리신청자 신분증
- ⑤ 대리신청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3) 수임관계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 ① 체류지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제34호의 8서식, 국내거소이전 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 5서식)

②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

③ 위임장

-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체류지변경신고),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설립인가서 등

- 위임자가 소속된 회사, 단체, 조합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⑥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 위임자가 소속된 회사, 단체, 조합 등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소속된 자의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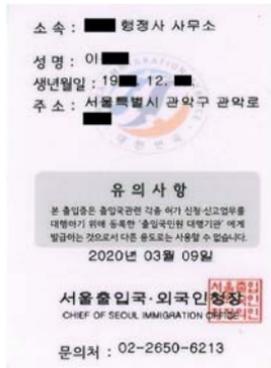
① 체류지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제34호의 8서식), 국내거소이 전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제1호의 5서식)

②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

③ 위임장

-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체류지변경신고),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

④ 대리인 출입증(법무부에서 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발급한 출입증)



※ 외국인정보공통이용시스템 체류지변경신고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출입증번호를 입력하여 대행사명과 대리인 정보 확인 가능(위 대리인 출입증과 비교)



Q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시 수수료를 부과하나요?

▶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으로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로 같을 수 있나요?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법」의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등록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우선, 임대차 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숙소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5일 이내(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처리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 체류지변경신고 기한인 15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며,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이전신고 기한인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임

▶ 체류지가 거주불명(「21.6.1.시행」)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경우 체류지변경신고는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신청서를 수정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자에게 정정하도록 요청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주소(체류지)를 입력한 이후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 또는 인쇄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 체류지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체류지 기재란이 2칸인 경우)에는 체류지변경신고 2회째까지는 체류지란에 기재하고 3회부터 5회까지는 등록증 여백에 신고받은 주소를 기재하여 변경신고 처리합니다.
 - ※ '15.6. 이후 발급된 등록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등록증 소지자에 대해 체류지변경신고 5회까지는 등록증 재발급 없이 체류지변경신고 처리를 허용
 - ※ 등록증의 체류지 기재란이 부족하나 체류지변경신고 대상자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일자 등 권리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지변경신고 선처리 후 등록증 재발급 안내가 필요하므로 체류지변경신고 처리(체류지변경 사항 시스템 입력 등) 후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안내하고 등록증 재발급 고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체류지변경신고서 여백에 "체류지 기재란 부족으로 등록증 재발급 안내 필"이라고 담당자가 기재하여 보관

Q 외국인등록표(국내거소신고표) 이송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요?

-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체류지변경(거소지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표(국내거소신고표) 이송 등의 후속조치는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2. 각종 증명발급

Q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Q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에 있습니다.

Q 출입국 사실증명의 대상자와 증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 외국인 모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정부24(인터넷)에서는 국민에 한하여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
- 증명기간의 시작시점은 국민의 경우 '61.1.1.부터, 외국인은 '79.1.1부터 증명발급이 가능하고, 종료시점은 현재일 기준 전일(前日) 날짜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Q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에는 각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 : 재외공관의 장
※ 만약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에서도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급 가능

Q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성명 등 인적사항
- 최종 사용 여권번호 및 출입국일자
 - 새로 발급받은 후 한번도 행사하지 않은 여권번호는 사실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 (목적지 또는 출발지 국가) 여행목적은 환승 및 개인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필요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개인정보열람 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 확인 가능

Q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 ▶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출입경(국민) 기록
- ▶ 출입국사실이 없는 국민·외국인에 대한 “기록없음” 증명
 - ※ 갱신한 여권번호 미 표기에 따른 여권 정보 확인은 외교부 발급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통해 확인 가능

Q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신청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
-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

Q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본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생략가능), 영문명 병기 등 신청자 선택사항을 고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신분증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시 인정)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미성년자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7조(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은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미성년자 신분증 : 여권 또는 여권이 없을 경우 학생증(본인 여부 확인 절차)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 또는 모)·후견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미성년자의 친생 부(父) 또는 친생 모(母)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자 중 1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 ①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 ② : ①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③ : ①, ②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가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③ 법정대리인의 입증서류

-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위임을 받은 자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외 체류 등의 이유로 사본(휴대폰 이미지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ex. 출입국기록 확인, 유선 확인 등 확인 사항에 대한 통화 날짜·시간·내용 등 기록 유지)되는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함

③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④ 위임장

-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별지 제138호의2 서식) 상의 위임장 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도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증명 발급 불가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해외 이삿짐 확인 : 선하 증명 또는 해외 배송 확인 서류
-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 학교 입학 요강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해지 등 : 가입 증명 서류
- 인터넷·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 서류
- ▶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 대리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신청인 신분증
 - 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③ 고용 관계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과거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용도 입증 서류 : 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신청인(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신분증
 - 소송 등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당사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③ 용도 입증 서류
 -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 서류*

* 사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Q 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3년 11월 기준 2,000원(수입증지)입니다.
- ※ 정부24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Q 성명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 ▶ 국민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입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표기된 성명 표기에 따라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기입하며, 여권 MRZ(기계판독영역)상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 사이 띄어쓰기 표기에 따라 기입합니다.
- ※ (예시) KHATRI□DHIREN□DELISTON / □→빈칸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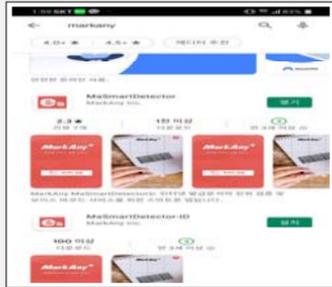
Q 증명서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인터넷)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인터넷)에서 증명서 진위확인 검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Play스토어 ⇒ MarkAny(MaSmartDetector) 앱 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증명서 진위 확인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인터넷)에서 증명서진위확인 검증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확인, ② 모바일 -> Play 스토어 → MarkAny(MaSmartDetector) 앱 설치 후 확인



[육안 판독]



원본일 경우->증명서 하단에 "원본"글씨 보임



사본일 경우->증명서 하단에 "원" 글씨 안보임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대상자와 증명 범위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는 현재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과 과거 국내에 체류하였던 등록외국인이며, 증명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항입니다.
 ※ 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한 외국인등록 말소(과거체류자)자도 증명 발급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에는 각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

※ 만약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에서도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발급됨 (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불가)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성명 등 인적사항, 체류상태 구분

체류상태	체류상태 표현 문구
현 체류자(출국기한연장자 포함)	현재 등록자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경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
출국기한유예자	출국기한유예자
과거 체류자(사망 말소자, 완전출국자)	등록말소자(사망), 등록말소자

- ▶ 체류자격, 체류기간, 주소지 등 외국인등록사항 일체

※ 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정보 최소화(예를 들어 주소지 변동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현재의 주소지로 설정하여 제공, 주소지 변동 사항: 전체/3년 이내/현재)

- ▶ 동거 가족 사항

※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A-3, F-1, F-2, F-3, F-5, H-2, G-1)을 받은 외국인(동반가족 입력·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Q 증명 발급 신청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
-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생략가능), 주소정보 포함 범위 등 신청자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하게 확인
- ② 신분증(이하 신분증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주민등록 후단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차세대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시 인정) 중 택일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 (운전면허증) 국적, 체류자격 미 표기·동일인 확인 요소 미흡 /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미성년자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 발급이 가능
- 미성년 외국인등록자에게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해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여권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등록사항 확인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증명발급 대상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 ④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의 미성년 자녀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등 입증 서류
 - 외국인 미성년자녀 : 외국인 부(父)와 성(姓)이 동일하고 동일한 체류지인 경우 가족관계로 인정
 - ※ FINE 시스템에서 등록사항 확인
 - ※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사증(VISA) 정보 등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위임을 받은 자

-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 ②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③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 ④ 위임장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별지 제138호의2 서식) 상의 위임장 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

※ (외국인의 도장)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상의 영문명 도장만 가능(단, 한자를 쓰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비록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명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여권 등)를 통해 한자 또는 그 한자의 원어 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 표기 도장 가능)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해외 이삿짐 확인 : 선하 증명 또는 해외 배송 확인 서류
-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 학교 입학 요강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해지 등 : 가입 증명 서류
- 인터넷·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 서류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 대리인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 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③ 고용 관계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과거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신분증

- 소송 등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당사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③ 용도 입증 서류 :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 서류*

* 사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 채권·채무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금융회사·법인 방문자의 경우 :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③ 용도 입증 서류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확정 판결문 사본
- (금융회사)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 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 연체 관련 문서*,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및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증명서(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발급) 등 및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 확인서
- (개인·법인) 개인·법인 등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외) :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3년 11월 기준 2,000원(수입증지)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Q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2015.01.22.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업무는 중단됨
- 따라서 현재 과거 증명서에 준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는 개인정보열람 청구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 청구방법 : 인터넷(www.open.go.kr) 청구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Q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Q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대상자와 증명 범위 어떻게 되나요?

- ▶ 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외국인(현 체류자, 과거 체류자)이며, 증명 범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항입니다.
- ※ 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한 과거체류자도 증명 발급

Q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느 기관이 있나요?

-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에는 각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
- ※ 만약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에서도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발급됨(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불가)

Q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① 성명 등 인적사항, 체류상태 구분

체류상태	체류상태 표현 문구
현 체류자(출국기한연장자 포함)	현 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경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

체류상태	체류상태 표현 문구
출국기한유예자	출국기한유예자
과거 체류자(사망 말소자, 완전출국자)	거소말소자

② 체류자격, 체류기간, 주소지 등 국내거소신고 사항 일체

③ 동거 가족 사항

※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A-3, F-1, F-2, F-3, F-5, H-2, G-1)을 받은 외국인 (동반가족 입력·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Q 증명 발급 신청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Q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생략가능), 주소정보 포함 범위 등 신청자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하게 확인
 - ② 신분증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미성년자 본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 발급이 가능
- 미성년 거소신고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므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거소증 미발급자에 한해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여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으므로 거소신고사항 확인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② 증명발급 대상자 신분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의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 서류
- 외국인 미성년자녀 : 외국인 부(父)와 성(姓)이 동일하고 동일한 거소지인 경우 가족관계로 인정

※ FINE 시스템에서 등록사항 확인

※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사증(VISA) 정보 등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위임을 받은 자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③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④ 위임장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 상의 위임장 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

※ (외국인의 도장)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상의 영문명 도장만 가능(단, 한자를 쓰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비록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명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여권 등)를 통해 한자 또는 그 한자의 원어 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 표기 도장 가능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해외 이삿짐 확인 : 선하 증명 또는 해외 배송 확인 서류
-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연기 : 적성검사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 학교 입학 요강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해지 등 : 가입 증명 서류
- 인터넷·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 서류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 채권·채무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금융회사·법인 방문자의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③ 용도 입증 서류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문 사본

- (금융회사)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 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및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증명서(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발급) 등 및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 확인서

- (개인·법인) 개인·법인 등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외, 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신분증

- 소송 등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③ 용도 입증 서류: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 서류*

* 사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Q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3년 11월 기준 2,000원(수입 증지)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Q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Q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제1항 제4호 등이 있습니다.

Q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단기 체류 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A-3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 부여 불가 대상 :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외국법인(관할 등기소 문의)

Q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발급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우편접수 가능)
- ▶ 재발급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이 가능하나, 공항만 사무소나 지자체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3년 11월 기준 1,000원입니다.

Q 등록번호변경 확인서

Q 외국인이 등록번호변경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발급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은 ① 외국인등록 대상에서 거소신고 대상으로 변경되거나, ② 거소신고 대상에서 외국인등록 대상으로 변경되거나,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 번호 부여 오류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 번호가 변경되어 등록번호 변경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번호변경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각종 증명발급시 주의 사항

1) 수수료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되며, 증명 발급 대상자가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 없음
-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제3항 제2호

유형	면제 대상자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
3. 고엽제후유증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
6.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행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

2) 개인정보 보호

- 증명 발급 업무 수행 목적 외에 제3자의 요청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기록조회는 절대 금합니다.
※ 수사 또는 개인정보공개청구 시 기록조회 로그 정보가 제공되며 이로 인한 문제는 기록을 조회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3) 대외제공 및 공용발급

대외 제공 불가,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공용발급 제도 없음

- 개인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기록,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관계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입국 사실에 대한 기록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공용발급 제도는 없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전자문서(=사실조회 요청)로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치단체 내 타 부서로부터 요청(법적 근거 반드시 확인)을 받은 경우 활용 승인 사물에 한하여 부서 간 전자문서(=사실조회 요청)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용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사실조회 하도록 안내(공문 이송 처리)

4)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시 주의 사항

■ 동명이인(同名異人) 기록 및 출입국순서 보정

-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입국-입국 또는 출국-출국이 연속되는 원인으로는 증명 발급 대상자 기록과 동명이인의 기록 존재, 당일 출국·당일 입국으로 인한 순서 오류(2008년 이전 기록), 출입국기록 누락 등 기록 생성 오류 등이 있습니다.
- 동명이인의 기록을 빼거나 순서보정 등 증명 발급 전 기록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선원의 경우 기록저장 방식이 일반 승객과 달라 기록 오류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개명자(改名者) 증명 발급

- 개명 전 출입국기록과 개명 후 출입국기록에 대해 각각의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명 전 출입국기록을 개명 후 인적사항으로 변경한 증명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개명에 따른 개명 전 출입국기록과 개명 후 출입국기록을 합치는 국민만 가능

■ 복수국적 보유자 증명 발급

- 출입국기록은 출입국심사 시 행사한 여권으로 기록이 생성되므로 국적이 다른 여권으로 출입국기록이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행사한 여권별로 각각의 증명발급만 가능하며, 통합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 불법체류자 사실증명서 발급

- 선행되어야 할 출입국행정 업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후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인지 관련, 본인이 여권만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① 등록증 유무 확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확인)
 - ② 등록증이 없다고 하는 경우
: (단기체류자) 최종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통상 불법체류자로 간주

: (등록외국인이었던 자) FINE ⇒ 정보조회 ⇒ 등록외국인관리 ⇒ 등록외국인기록조회 ⇒ 해당인 생년월일과 영문성명 입력 후 조회·확인

■ 당일 입국 기록 증명

- 당일 입국한 기록이 포함된 증명은 FINE 시스템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안내하여야 합니다.
 - ※ 당일 출국한 기록이 포함된 증명 발급은 불가하므로 출국일 다음날 증명을 신청하도록 안내(출입국기록은 출입국일 다음날 기록이 생성됨)

5)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시 주의 사항

■ 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신청 접수 후 시스템에 입력되면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교부 전(前)에도 사실증명은 발급 가능

■ 체류지(거소지) 정보 표출

- 체류지(거소지) 정보는 현 주소만 표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민원인 신청에 따라 최근, 3년 주소 또는 이력 전체가 포함된 증명 발급도 가능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등록외국인 말소 등 사망자 기록 정정을 위해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망 신고 이후 발급 가능하므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Q 신고서 등 보존기간

Q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신청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 법무부 기록관리 기준표에 따라 체류지변경(거소이전) 관련 신고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각종 증명 발급 신청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 이용

Q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 또는 각종 증명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서 여백에 동의 받은 사실(동의자, 동의 시간)을 기재하여 보관
- ▶ 동의 요청 시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방법과 부동의 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민원인 선택에 따라 처리함을 안내합니다.

※ 구두 동의 안내문 예시

-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Q 통계자료 활용

통계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 1)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자치단체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2) ① 통계자료를 상기 내부 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된 통계자료를 수정·가공하여 새로운 자료로 변형하는 경우, ③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 ④ 통계자료를 타 기관, 언론사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3) 읍·면·동 단위의 외국인 통계의 경우, 특정 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정보 등이 식별되어 개인정보 침해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확인에 따른 지역 슬럼화 우려 등으로 비공개 사항입니다.

외국인정보(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활용 승인 사무

- 정보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근거법률을 명시(확인) 후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 [아래 개별 활용 승인 사무의 근거 법률은 예시에 불가한 사항임]
- 위임사무에 따른 승인 사무 담당자의 권한 등록을 우선으로 하고, 활용 승인 사무 담당자는 최소화하여 기관별 허용 인원 적정 관리 필요

1) 선거사무

- 근거법률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37조
- 활용방법 :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2) 주민소환투표사무

- 근거법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활용방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3) 지방세의 부과·징수·납세 관리 사무

- 근거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 제134조의5
- 활용방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세적 작성 및 체납자 관리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사무

-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제2조
- 활용방법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청구권 또는 연서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수행 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무

-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활용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수행 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부 록

- 1. 외국인 관련 법령
- 2.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1. 외국인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주요 내용	소관 부처
국내 체류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등	법무부
신분 증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신고의 장소,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등	법무부
	주민등록법	• 대상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소환투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 인구의 기준, 선거권 등		
사회보험·사회보장	정치자금법	• 기부의 제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법	•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사회보장기본법	•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지원대상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장애인복지법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의료·보건	한부모가족지원법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보건의료기본법	•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자보건법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의료급여법	• 난민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검역법	•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정	질병관리청	
아동·청소년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여성가족부
	영유아 보육법	•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무상보육 등	보건복지부
조세	소득세법	• 과세소득의 범위	기획재정부
	국세징수법	• 납세증명서의 제출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생략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② 제19조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③ 생략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② 생략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 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⑤ 생략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신분 증명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생략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②~⑤ 생략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
- ⑤~⑥ 생략

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② 생략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②~④ 생략

1)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4) 공직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15조(선거권) ① 생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2.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2~9. 생략

② 생략

5)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사회보험·사회보장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⑨ 생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② 생략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급에 상응하는 연급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급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3) 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의료급여법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대상)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생략

6) 검역법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의2. 생략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8. 생략

2)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략)

1~4의2. 생략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8. 생략

②~③ 생략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③ 생략

2)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생략

② 생략



2.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Q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기관명(주소)		전화번호	증명발급	관할구역	
인천 공항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032-740-7119	7391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서울역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지하 2층)	02-362-8431	8432	서울특별시	서울역
서울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02-2650-6210	6374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관악구·광진구·동작구· 서초구·성동구·송파구·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2, 3층)	02-731-1708	1739	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부산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051-461-3166	3127	부산광역시	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사상구· 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동구·서구· 강서구·사하구·중구·남구·영도구·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5층)	055-344-7835	7835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11층)	051-254-3917	3917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인천	인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032-890-6322	6306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동구·부평구·중구·남구· 남동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수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031-695-3863	3846	경기도	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 주시·양평군·여주군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3, 4층)	031-8024-9623	9614	경기도	오산군용비행장·평택시·안성시·오산시
	평택항만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031-683-6938	6938	경기도	평택항

기관명(주소)		전화번호	증명발급	관할구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064-741-5443	5433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서1로 48)		02-6980-4725	4735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서구·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 영등포구·양천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2층)		031-364-5719	5735	경기도	안산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광명시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051-979-1300	1300	김해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345)	053-980-3536	3540	대구광역시	북구·동구·서구·중구·달서구·남구· 수성구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2, 3층)	054-459-3530	3530	경상북도	경산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고령군· 군위군·달성군·봉화군·성주군·영양군· 예천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5)	054-240-5452	5454	경상북도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대전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종로26번길 7)	042-220-2001	2125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충청남도	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 부여군·서천군·청양군
				세종특별 자치시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4층)	041-621-1347	1346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6층)	041-681-6186	6188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홍성군·보령항(선박업무)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 2층)	041-352-6174	6173	충청남도	당진시·당진항(선박업무)	

기관명(주소)		전화번호	증명발급	관할구역	
여수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주시 무선로 265)	061-689-5511	5512	전라남도	여주시·순천시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2길 23)	061-792-1139	1139	전라남도	광양시
양주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	031-828-9377	9391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5층)	031-936-5031	5019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052-279-8024	8007	울산광역시 경주시	울산광역시·중구·북구·남구·동구·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02-2664-6202	6202	김포공항	김포국제공항
광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062-605-5280	5143	광주광역시	광산구·서구·북구·남구·동구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 담양군·보성군·영광군·장성군·장흥군· 함평군·회선군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412번길 26)	061-283-7294	7245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 완도군·영암군
무안공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3-8846	8846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창원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055-981-6007	6016	경상남도	창원시·진주시·거창군·고성군·산청군· 의령군·창녕군·합안군·함양군·합천군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길 5)	055-645-3405	3405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	055-835-3988	3988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기관명(주소)		전화번호	증명발급	관할구역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055-681-8133	8133	경상남도	거제시
춘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033-269-3221	3210	강원도	원주시·춘천시·양구군·영월군·인제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033-535-5722	5722	강원도	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033-636-8614	8613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고성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097)	033-680-5101	5101	강원도	고성터미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043-230-9030	9020	충청북도	제천시·청주시·충주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음성군·진천군·증평군
전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063-249-8693~4	8619	전라북도	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51-1)	063-445-3874	3874	전라북도	군산시·장항항(선박) * 장항(서천군)의 체류는 대전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031-8055-7000	-	전국	전국(체류업무x)
청주외국인보호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정남로1887번길 49)		043-290-7512	-	전국	전국(체류업무x)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032-745-3336	-	전국	전국(체류업무x)

1) 다문화이주민+ 센터 개요

- (목적)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업무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 출입국체류민원(법무부), 고용허가민원(고용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지자체)
- (운영방식)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여 복합 서비스* 제공(공간통합형)하거나, 기존 기관에 타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 업무 확대(기능추가형)
 - * 민원행정서비스(체류허가·고용허가제 등) + 정착지원서비스(결혼이민자상담·한국어교육 등)
- (기관별 주요 업무)

기관	주요 업무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 • 근무처변경 허가 •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 출입국사실증명 및 제증명 발급
고용노동지청 외국인고용관리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취업기간연장(재고용허가)신청 • 사업장 정보변경(지사이동, 승계 등)처리 •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처리
이주노동자센터 (고용노동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 안내 •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컴퓨터 교육 • 의료지원 활동 및 문화행사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의료 등 생활정보 안내 •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사회통합교육 •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 학생 공교육 적응지원 등

2)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현황 (총 24개)

공간통합형 (10)	한 건물 내에서 민원업무와 사회적응 지원서비스 이용	2017년	아산, 안산		
		2018년	양주 (※ 출입국 건물에 입주)		
		2019년	시흥, 김포, 익산, 천안		
		2021년	음성, 영등포	2022년	광양
기능추가형 (14)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타기관의 기능 (외국인력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쉼터 등)을 연계하여 수행	2017년	남양주, 이천, 파주, 수원		
		2018년	양산, 종로		
		2019년	전주, 당진, 관악, 제주도		
		2020년	은평, 여주, 성동		
		2021년	영등포		

- (법무부 직원 현황) 공간통합형 10개 센터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총 36명
 ※ 아산시(4), 안산시(6), 시흥시(5), 김포시(6), 익산시(4), 천안시(3), 음성군(4), 영등포(3), 광양(1)
- 개소 기관 : 총 24개 (공간통합 10, 기능추가 14)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협업기관
경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031-594-5821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천시 가족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전로31, 중이동행정복지센터 3층)	031-6311-2260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파주시 가족센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507-1310-9164	▶ 여가부 다문화지원가족센터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 7, 8층)	031-223-0075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지자체 안내요원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3층)	031-481-3301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용부 고용센터 민원처리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지자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2번길 23)	031-828-9330	▶ 고용부 고용센터 민원처리 ▶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031-434-0411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지자체 외국인복지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031-986-7660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남	양산시 가족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1길 7-1)	055-382-0988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29, 2층)	02-764-3524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02-883-9383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1층)		▶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분소개념으로 운영)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협업기관
전남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4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2길 9-7, 3층)	061-797-6834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66, 6층)	063-243-03333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통번역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53, 4층)	063-850-8300	▶ 익산시 ▶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 여가부 다문화가족센터(통역) ▶ 지자체 심터 운영
제주	제주이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시 중앙로 56, 3층)	064-712-1141	▶ 지자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가족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041-548-9779	▶ 법무부 천안출장소 ▶ 고용부 고용센터 민원처리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38, 4층)	0507-1357-3201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1522-1866	▶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 법무부 천안출장소 ▶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충북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금강읍 금석로 71)	043-883-6727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용부 지방고용관서 ▶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 이 외 행안부에서 현황 관리 중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영등포구, 성동구 3곳이 더 있음



외국인주민 자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서울	서울글로벌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02-2075-4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제공(생활, 전문상담) - 13개언어 • 한국어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 통합행정서비스(운전면허, 보험, 통신, 생활사건)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 홈페이지 운영 등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제공(생활, 전문상담) • 국가별커뮤니티사업 • 문화체험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 홍보네트워크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7-1)	02-2282-7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 3층)	02-868-5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4-26, 3층)	02-359-3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13길 56, 1층)	02-478-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02-2643-0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6길 23, 2층)	02-911-2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지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6)	02-733-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심리상담지원, • 다국어 통번역 지원, 긴급보호시설운영
	강남글로벌별리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5층)	02-3423-7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생활불편상담 및 전문상담 • 교육사업 : 한국어강좌 및 기타 교양강좌 • 문화사업 : 문화체험 및 문화탐방 등 • 행사운영 : 세미나, 자원봉사, 역사겨울이야기 등
	금천글로벌별리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6, 3층)	02-2627-2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제공(생활, 전문상담) • 한국어강좌 •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 지역문화사업 추진
	연남글로벌별리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02-6406-8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강좌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 • 상담서비스(생활, 전문상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02-2241-6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익 향상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한국어수업 5개반운영 민화수업, 한지공예수업, K-pop교실운영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02-2199-8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사업 :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교육사업 : 한국어강좌, 기타교양강좌(전통문화체험등) 문화사업 : 서울문화탐방, 커뮤니티행사 지원 등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4, 304호)	02-2199-8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사업 :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교육사업 : 한국어강좌, 기타교양강좌(전통문화체험등) 문화사업 : 서울문화탐방, 커뮤니티행사 지원 등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28, 3층)	02-2155-8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서비스 제공(생활, 전문상담) 한국어강좌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사업 추진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B동 501호)	02-2678-7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상담, 교육, 진로체험, 문화교류 등 	
다들림문화복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1길 11)	02-2670-1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화 프로그램, 무료법률상담, 가족친화프로그램 등 	
부산	부산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1577-7716 (콜센터) 051-711-68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종합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48, 3층)	051-304-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종합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나눔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21번길 14)	051-327-7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한국생활지원 및 정보제공 다문화커뮤니티형성 및 지원, 상담, 멘토링사업 지역연계네트워크 및 다문화나눔터홍보 등
대구	달성외국인 근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053-611-8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특화사업
인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8층)	1833-6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상담 및 콜센터 운영, 한국어교실, 자조모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IFEZ 글로벌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032-453-7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법률 상담,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101호)	032-876-7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교육 및 체육행사, 문화체험 등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 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41, 2층, 3층)	042-223-0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지원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 등 • 국제교류협력 - 외국 도시, 대학, 기업과 국제교류 사업 추진 -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등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60, 8층)	1577-2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종합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경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031-492-9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담 및 교육, 실태조사,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	031-594-5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 • 이주민공동체 및 영·유아보육지원프로그램 • 외국인복지센터통역지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등
	성남시외국인주민 복지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031-754-7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복지센터지원사업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 외국인주민 의료보건지원사업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	0507-1303-1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 외국인주민상담 및 통역,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외국인주민공동체, 무료급식, 외국인주민자율봉사단 • 세계인의날 "세계문화축제", 외국인주민체육대회, 문화역사체험,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동체리더활동 및 동아리활동, 취업교육 등
	문화더함공간 서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3, 지하1층)	031-8059-5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다양성 활동 진행 • 국가별축제, 한국전통문화체험, 이중언어교육, 지역사회봉사단, 동아리활동 등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301호)	031-337-3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디지털역량강화교육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사업 • 외국인주민 상담, 통역사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생활문화공동체사업 • 마을공동체사업 • SNS소통증진 서포터즈활동 지원사업 등
<p>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09번길 15, 6층)</p>	031-885-8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통역지원 • 외국인복지센터사업지원(취업지원, 교민회운영,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 내외국인소통프로그램운영
<p>수원시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p>	031-247-1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p>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p>	031-223-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상담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운영 등
<p>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3층)</p>	032-654-06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및 쉼터 운영 • 외국인주민공동체 사업 지원 • 외국인주민교육사업 및 조기적응지원 •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 내·외국인 문화소통프로그램 • 동아리모임지원사업 • 부천다문화축제
<p>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p>	031-481-3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구축 •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 인권증진기반조성사업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사업 •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 •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사업
<p>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p>	031-986-7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 외국인주민 상담 및 통역 지원 •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운영 •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 외국인주민 문화 및 직능교육 운영 • 고려인주민 한국어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복지센터 및 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 운영 •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 내·외국인 문화소통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 동아리 모임 지원 • 김포 세계인근잔치 축제 운영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지원
	<p>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p>	031-434-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 및 통번역 지원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시흥국제청소년학교 운영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 국가별 공동체 지원 •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 외국인근로자 단기쉼터 운영 등
	<p>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분관)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50번길 6-1)</p>	031-434-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상담 및 통번역 지원 •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시흥국제청소년학교 운영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 국가별 공동체 지원 •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 외국인근로자 단기쉼터 운영 등
강원	<p>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143-7)</p>	070-7521-8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통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여가지원
충북	<p>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1)</p>	043-883-6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통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여가지원
충남	<p>천안시외국인주민문화 교류지원센터</p>	070-7733-8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공연 체험공간 운영
	<p>천안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p>	041-41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고충상담과 한국어 등 교육서비스 •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귀국지원서비스 • 국내 취업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서비스
	<p>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203호)</p>	041-541-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공동체 행사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사업 • 의료지원, 법률상담, 한글교육 등
	<p>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149)</p>	041-352-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상담 및 고충해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내용
	서천군HAPPY외국인 지원센터	041-956-9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 및 한글교육 등
	홍성이주민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44)	041-631-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한국어 학당 • 한국문화체험활동 • 이주노동자 문화체험활동 • 다문화작은도서관 • 이주민상담지원
전남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 서비스지원, 다문화이해, 복지사업 등
경북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상북도 북구 죽도로 16번길 6)	054-272-7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상담소 운영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97)	054-244-9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상담소 운영
	구미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28)	054-455-2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생활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각종행사 등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한국어 수업, 무료진료, 문화체험
	구미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054-482-5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및 생활지원 쉼터운영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4-333-9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교육 제공 등
	영천외국인상담센터	053-856-0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통역사업, 문화행사 등
	경산시외국인상담소	053-856-0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노동(민·형사)상담 및 법률상담, 한국어교육 등
경남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	055-237-87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 외국인주민 근로, 생활, 고충, 인권 등 상담 •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창원이주민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1번길 16)	055-275-8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복지, 문화사업, 쉼터운영, 봉사활동
	웅남동외국인커뮤니티센터 (웅남평생학습센터)	055-286-5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수업(주2회), 요리, 문화체험 및 상담(수시)
	가야글로벌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17)	055-311-1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한국어교실, 사회적응교육) • 무료법률상담사업, 홍보캠페인 실시 • 취창업 연계 및 위기외국인 발굴 연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양로 56, 3층)	064-712-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사업 • 외국인근로자 노동 권리 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업무 지침서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143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 2285-5278

※ 이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인용·발행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법무부·행정안전부